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58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인요한・성일종・구자근

장동혁 • 권영세 • 박준태

권영진 · 최수진 · 우재준

김도읍 • 조승환 • 김석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일정 시설·사업장의 취업을 제한받게 됨. 또한,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설치·점검·수리 등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집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들의 성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하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7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56조제1항제26호의 가정방문 재화ㆍ서비스 제공 사업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56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 략) <u><신 설></u>

② ~ ⑨ (생 략)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① · ② (생 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 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

<u>.</u>
1. ~ 25. (현행과 같음)
26.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
<u>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u>
장"이라 한다). 이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
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 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17. (생 략) <u><신 설></u>

④ ~ ⑥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56조제1항제26호의 가정
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
<u>장</u>
④ ~ ⑥ (혀해과 같은)